#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서영교·박희승·이훈기

민병덕 • 백승아 • 이해식

윤준병 • 강유정 • 위성곤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 주거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현행 주거지원 규정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시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 대주택(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용면적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 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정 전용면적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자녀를 출산하여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1.2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임대 후 분양전
			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
			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용면적
			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u>공급하여야 한다.</u>
			<ol> <li>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li> </ol>
			적 60제곱미터 이상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